

감 사 원

징계·시정·주의요구

제 목 ㄱ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업무 태만

소 관 기 관 전주시

조 치 기 관 전주시

내 용

1. 업무 개요

전주시는 2006. 3. 7. 주식회사 ○○⁷⁾(대표이사 A, 전라북도 전주시 ▲구)와 민자유치 협약을 맺고 사업부지 내에 있는 묘사단 및 흥항공대(헬기부대)를 임실군 등에 이전한 후 [그림]과 같이 ㄱ 도시개발사업[총개발면적 1,999,541㎡, 총사업비 1조 1,169억 원(2015년 5월 기준), 사업기간 2006~2021년]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ㄱ 도시개발사업 계획도

현황 사진	계획도
-	

자료: 전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ㄱ 도시개발사업의 민자유치 협약서 제6조에 따르면 주식회사 ○○가

7)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으로서 주식회사 □□건설(40%), 주식회사 △△건설(19%), 유한회사 ▷▷건설(14%), 주식회사 ▽▽건설(11%) 등이 출자

위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협약서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르면 위 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은 주식회사 ○○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전주시는 2015. 5. 27. 위 사업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총 4,316,481,000원을 주식회사 ○○⁸⁾에 부과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30만 m²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시설부지매입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m²당 조성원가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73호)의 제5항 가호 및 바호에 따르면 택지 m²당 조성원가는 총사업비를 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고, 총사업비는 택지개발·조성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투입된 총비용으로서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으로 구성되며

8) ㄱ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명목상으로 전주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전주시에 부과하였으나 민자유치 협약서 제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실제로는 주식회사 ○○가 납부함

이주대책비는 이주대책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르면 납부대상자는 개발예정 택지의 m²당 부지매입단가(조성원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납부계획서를 해당 택지 등의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납부대상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으면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주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ㄱ 도시개발사업(총개발면적 1,999,541m²으로 30만 m²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해당)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개발예정 택지의 m²당 부지매입단가(이하 “조성원가”라 한다) 등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여 납부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부과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를 이주대책비 등이 포함된 총사업비에서 총개발면적이 아닌 총유상공급 대상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여 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특히 ㄱ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묘사단 및 흥항공대 이전비용 등(8,059억 원, 2015년 5월 기준)이 총사업비(1조 1,169억 원, 2015년 5월 기준)의 72.1%에 달하는 등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조성원가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군부대 이전비용 등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위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ㄱ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업무 태만

전주시 △국 ▷과 B은 2014. 12. 26.부터 2015. 8. 11.까지, 덕진구 C은 2014. 12. 26.부터 2017. 1. 16.까지 전주시 ▽국 ◁과에서 각각 청소지도업무 담당자와 청소지도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업무 등을 담당, 주관하였다.

한편 B은 2015. 5. 21. 전주시 ◇과로부터 주식회사 ○○가 제출(제출일자 2015. 5. 19.)한 ㄱ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계획서를 전달받았는데 9) 위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개발예정 택지의 조성원가는 [표]와 같이 위 사업의 총사업비 1,116,941,279,000원이 아니라 묘사단 및 흥항공대 이전비용 등 (805,90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인 311,041,279,000원에 총유상공급대상면적 (986,110㎡)이 아닌 총개발면적(1,999,541㎡)을 나눈 값인 155,556원/㎡로 잘못 산정되어 있었다.

[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현황

(단위: 원/㎡, 원)

구분	전주시 산정 금액	정당한 산정 금액
조성원가	155,556 = 부대이전비용 등 제외 금액(311,041,279,000) / 총개발면적(1,999,541㎡)	1,132,674 = 총사업비(1,116,941,279,000) / 총유상공급대상면적(986,110㎡)
시설부지 매입비용(A)	888,381,000 = 조성원가(155,556) × 시설부지 소요면적(5,711㎡)	6,468,701,214 = 조성원가(1,132,674) × 시설부지 소요면적(5,7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B)	3,428,100,000	3,428,10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C=A+B)	4,316,481,000	9,896,801,214

자료: 전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9) ㄱ 도시개발사업의 명목상 사업시행자가 전주시(◇과)이어서 주식회사 ○○가 작성한 납부계획서가 전주시 ◇과를 거쳐 부담금 부과부서인 전주시 ◁과에 제출됨

그런데 B은 2015. 5. 27. 위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을 위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과-11459) 문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가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위 사업의 총사업비(1조 1,169억 원), 군부대 이전비용(8,059억 원) 등이 적혀 있어 이 첨부자료만 확인하였더라도 납부계획서에 기재된 조성원가가 잘못 산출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첨부자료를 확인하거나 조성원가 산출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납부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성원가를 그대로 인정하여 정당한 부과금액 9,896,801,214원보다 5,580,320,214원이 적은 4,316,48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위 문서를 작성한 후 ▷과 청소지도담당 C에게 결재를 올렸다.

그리고 C은 위 문서를 검토하면서 위 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의 산출근거를 확인하거나 B으로 하여금 산출근거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 부담금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위 문서를 그대로 검토한 후 ▷과장 D과 ▽국장 E의 검토·결재를 받아 위 문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주시는 2015. 5. 27. ㄱ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정당한 부과금액 9,896,801,214원보다 5,580,320,214원이 적은 4,316,481,000원만 부과하게 되었다.¹⁰⁾

10) 주식회사 ○○는 2015. 5. 2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차분(50%) 2,158,241,000원을 전주시에 납부하였고, 나머지 2차분(50%) 2,158,240,000원은 준공예정일인 2020년 12월에 납부할 예정

나. ㄱ 도시개발사업 부담금 부과업무 처리 부적정

전주시 <과장 D은 2015. 5. 27. 부담금 부과업무 담당자 B이 기안하고 담당 C이 검토한 “전주 00부대 이전부지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납부”(<과-11459) 문서를 검토하면서 “3항 가”와 같이 정당한 부담금 부과금액 9,896,801,214원보다 5,580,320,214원이 적은 4,316,481,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문서가 작성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토하여 ▽국장 E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그 결과 “3항 가”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① 관련자 주장 및 판단

B과 C은 ㄱ 도시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업무를 잘못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주시 ◇과로부터 공문으로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납부계획서의 내용을 믿고 조성원가의 산출근거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주시장을 대신하여 주식회사 ○○로부터 제출받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부과·징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서는 ◇과가 아닌 <과인 점, B이 주식회사 ○○ 직원을 수차례 사무실로 불러 위 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전협의를 하였던 점, ◇과는 주식회사 ○○로부터 받은 납부계획서

를 단순히 <과에 전달한 것에 불과한 점, 납부계획서의 첨부자료에 조성원가가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총사업비(1조 1,169억 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사람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관계기관 의견

전주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금을 추가 부과할 계획이며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담금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징계요구 양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B과 C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전주시장은

- ① ㄱ 도시개발사업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업무를 태만히 한 B과 C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고(징계)
- ② ㄱ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부터 부족하게 부과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580,320,210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추가 징수하며(시정)
- ③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과소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

저희 하고

④ 관련자 ▽국 ◁과장 D(현 ▽국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